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/18

	업무지침서	문서번호: 5GG-0900-010 페이지: 18(표지포함)
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목:
TITLE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

개정번호 REV.NO.	등록일자 Date	내용 Description	작성 Preparation	검토 Review	승인 Approval	등록 Register
0	'20.02.04.	최초발행	최효준	한일희	이근배	최효준
1	'20.06.03.	양정기준 개정	임홍철	한일희	이근배	최효준
2	'20.11.26.	자율준수편람 개정기준 등 추가	최효준	한일희	이근배	최효준
3	'21.05.14.	교육강사 기준 강화 등	조명래	최효준	이근배	조명래
4	'21.11.03.	교육 및 운영평가 기준 강화 등	조명래	최효준	이근배	김정원
5	'22.03.18.	양정기준 개정	조명래	최효준	강성민	김정원
6	'22.07.04.	CP주관부서 직원 자격 추가 등	임홍철	한일희	강성민	김정원
7	'22.10.01.	양정기준 개정	임홍철	한일희	강성민	김정원
8	'23.06.23.	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가	임홍철	한일희	최은두	김정원
9	'23.12.22.	양정기준 개정	임홍철	한일희	최은두	김정원
10	'24.07.08.	양정기준 개정	임홍철	한일희	최은두	김정원
11	'25.12.30.	자율준수협회의의 구성 및 선임 개정	정홍제	조명래	구창덕	정홍제
12	'26.06.30.	운영지침 개정기준 추가	정은석	최효준	구창덕	정홍제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2/18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

주관부서 : 공정거래그룹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(이하 "회사")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.

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공정거래 자율준수"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(이하 "자율준수"라 한다).
- ② "공정거래 관련 법령"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의 경쟁법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령을 말한다.
- ③ "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"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(이하 "CP"라 한다).
- ④ "자율준수관리자"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⑤ "자율준수협의회"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,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- ⑥ "담당본부"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로 자체점검을 실시, 감독하는 본부를 말한다.
- ⑦ "CP 주관부서"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3/18

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4 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 3 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)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,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 6 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)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CP 의 운영
2. CP 와 관련된 계획 수립
3. CP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 1 회 이상 실시
4.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4/18

5.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
6.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임직원 교육
7.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
8.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
9.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
10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7 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2.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 요구권
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제 2 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

제 8 조(조직의 구성)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 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①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입사 2 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CP 주관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.
 1.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2.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
 3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
- ③ CP 주관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.
- ④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9 조(CP 주관부서)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
2. CP 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,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
3.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
4.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
5.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5/18

6.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
7.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
8. 공정거래 관련 반기 1 회 모니터링 및 점검
9.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
10. 하도급 상생·협력 위원회 운영
11. 공정거래 관련 법령, 제도 및 회사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본 지침, 자율준수편람 및 관련 기준의 정기 검토와 개정

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

제 10 조(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각 사업본부 및 기획, 지원 본부내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으로 선임한다. 단, 본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 11 조(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 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 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 1.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재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, 자문
 2.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
 3. 위원별 담당부분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,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
 4. 각 위원별 담당본부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 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제 12 조(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자율준수관리자 지원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6/18

2.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하여 소속본부 CP 운영
 3. 본부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소속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
법 위반 예방
 4.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
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
 2.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3.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
 4.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

제 4 절 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제 13 조(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 구성)

- ① 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는 국내 법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 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
다.
- ② 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법무 담당임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사업본부의 PJT
관리 담당 부서장, 해당 계약담당 부서장, 원가관리 담당 부서장, 법무 담당 부서장(필요시)으
로 구성한다.
- ③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 14 조(하도급 상생·협력위원회 운영)

- ① 하도급 상생·협력 위원회는 현장, PJT 관리부서, 계약부서가 1 차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
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미합의시 현장(PJT 관리부서)의 요청에 의거 개최한다.
- ② 하도급 상생·협력 위원회는 필요시 현장, 관련부서,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③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은 자진 시정하여야
한다. 자진시정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내 기준에 의거 처분 한다.
- ④ 하도급 상생·협력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
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의사결정
 1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2. 부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7/18

제 5 절 임직원

제 15 조(임직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.

제 6 절 대표이사

제 16 조(대표이사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제 3 장 CP 의 운영

제 1 절 자율준수 의지선언

제 17 조(선언목적)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선언방법)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
제 2 절 CP 의 운영

제 19 조(자율준수편람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8/18

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-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주기적인 개정 검토(매월) 및 개정(반기 1 회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교육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1.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구매, 견적, 사업관리, 재무부서 교육
 2. 공무, 공사, 관리, 안전 등 현장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
 3.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
 4.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
 5.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 6. 대면, 온라인, 동영상,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
-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
- ③ CP 주관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동 지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 ④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, 만족도, V.O.C, 참석율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,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.
- ⑥ 교육을 하는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,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 년 이상으로 하며, 사내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.
 1. 시공관리, 제작관리,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 년 이상
 2. CP 주관부서 업무경력 1 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(CCP) 2 급 이상 자격 소지
 3.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 회 이상

제 21 조(문서의 관리)

-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 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.
- ②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.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9/18

제 22 조(위험성평가)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,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- ① 위험성평가는 분기 1 회 실시하고, 리스크등급은 상, 중, 하 3 단계로 구분한다.
리스크등급이 ‘중’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, 경감 또는 제거한다.

제 23 조(모니터링 및 점검)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- ① CP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본부 및 그룹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, 업무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.
- ④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시공관리, 제작관리,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.
- ⑤ CP 주관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.
 2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.
 3.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.
 4.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점검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5.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 ·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,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,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6.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제보시스템의 운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.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.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0/18
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공시)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운영평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기 1회 평가하여 경영층에 보고하고,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평가에는 주요 법령의 비준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운영평가자는 CP 주관부서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(CCP)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3 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

제 27 조(제재조치 요구)

- ① 본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28 조(제재의 원칙과 절차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을 따르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,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CP 주관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1/18

제 29 조(임직원 포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.
 1. CP 점검 우수 조직
 2.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
- ② 포상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을 따르며,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.

제 30 조(기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반기 1 회 이상 그 적정성과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며,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조직 및 업무 변경, 운영평가 결과, 주요 위반사례 발생 또는 기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할 수 있다.

별첨 1.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

별첨 2.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2/18

별첨 1.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

[개인책임 양정 기준]

조사주체	양정대상 건	위반행위 유형별 평가점수	양정	비고
공정위	신고접수/ 직권조사	50 점 초과	징계	-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양정
		50 점 이하	사장 경고	
	공정위/ 조정원 접수 후 합의	80 점 초과	징계	- 공정위 조사과정 중 발견된 명백한 법위반(서면,대금,부당특약 등)에 대해서만 기준에 따라 양정 (단, 공정위 접수 전 코칭에 대해서는 정상참작)
		70 점 초과	사장 경고	
		50 점 초과	본부장 경고	
		50 점 이하	주의	
법무실	공정거래그룹 점검	80 점 초과	징계	- 민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접수 후 점검 (당사, 포스코, 언론, 국회 민원 접수) -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점검 우선 대상 현장 선정 * 작업지시서 발급이 저조한 현장 * 계약변경이 많거나, 계약종료 후 잔액이 있는 하도급계약이 많은 현장 * 추가공사 이상징후 빈발 현장 등
		70 점 초과	사장 경고	
		50 점 초과	본부장 경고	
		50 점 이하	주의	
	현장요청에 따른 점검	70 점 초과	본부장 경고	- 하도급분쟁 예상 업체와의 법위반 Risk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코칭 요청 시 (단, 코칭 후 30 일 이내 <u>자진시정</u> 완료시 면책)

[관리책임 양정 기준]

구 분	내 용
관리책임 정의	부하직원의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직책보임자는 관리, 감독 노력 정도에 따라 인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.
판단기준	- 법 위반행위가 당해 직책보임자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함 - 해당업무에 대해 직책보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결여되어야 함. - 법 위반행위가 직책보임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직책보임자에게 관리책임이 아닌 직접책임에 의한 인사조치 의뢰
적용범위	업무과실자의 직상급자를 포함하여 인사조치 의뢰
양정범위	업무과실자 인사처분 대비 동등 혹은 1 단계 낮은 수준으로 인사조치 의뢰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3/18

[양정 감경 및 가중사항]

구 분	내 용
감경대상	-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- 신입(전입)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- 자율준수노력, 외부 법률 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-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-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
가중대상	-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 - 불성실 조사대응 및 허위진술 - 기타 고의적,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

[하도급법 유형별 세부 평가표]

구분	비중	100 점 (상)	67 점 (중)	33 점 (하)
위반 행위 유형	0.4	① 제 4 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② 제 8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취소·변경 또는 수령·인수의 거부, 지연 등을 한 행위 ③ 제 10 조를 위반하여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반품한행위 ④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⑤ 제 12 조의 3 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⑥ 제 19 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 ⑦ 제 20 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의 탈법 행위	① 제3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서면을 발급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 등을 강제로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한 행위 ③ 제 6 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또는 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 12 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청구한 행위 ⑤ 제 12 조의 2 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⑥ 제 12 조의 3 제 1 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제 12 조의 3 제 2 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⑧ 제 12 조의 3 제 3 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의 범위, 보유 임직원의 명단 등을 적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	① 제 3 조의 4 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제 7 조를 위반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행위 ③ 제 8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 9 조를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 11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⑥ 제 11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감액금액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⑦ 제 13 조의 2 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보증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 ⑧ 제 14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행위

구분	비중	100 점 (상)	67 점 (중)	33 점 (하)
위반 행위 유형	0.4		⑨ 제 13 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, 준공금이나 기성금,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또는 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,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,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 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⑩ 제 16 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,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지 아니한 행위, 추가 하도급대금 및 관련된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,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⑪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물변제한 행위 ⑫ 제 18 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	⑨ 제 14 조 제 5 항을 위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⑩ 제 15 조를 위반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⑪ 16 조의 2 제 7 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⑫ 제 17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·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⑬ 오프라인 작업지시서를 사용한 행위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6/18

구분	비중	100 점 (상)	67 점 (중)	33 점 (하)
위반 횟수	0.5	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3 번 이상 받는 경우	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2 번째 받는 경우	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처음 받는 경우
위반 대상 업체수	0.1	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3 개 이상인 경우	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2 개인 경우	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1 개인 경우

※ 단, 한 사람이 2 개 이상의 범위반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유형별 합산 점수의 80%를 적용한다.

※ 위반행위 가중 : 동일한 위반행위가 5 건 이상인 경우 20%, 10 건 이상인 경우 30%를 가중한다.

※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산정된 점수에 아래와 같이 가중한다.

- 1 백만원 이상 : 10% 가중
- 5 십만원 이상 : 5% 가중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7/18

별첨 2.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

[공정거래 우수현장 선정 평가표]

구분	평가요소		배점(점)	단위	비고
정량 평가	기본 점수	기본 부여	100	-	-
	감점 요소	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(공정위)	-100	건당	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
		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(자체점검)	-5	건당	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
		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발생	-10	건당	포스코(이앤씨), 공정위, 국회, 언론사 등 민원 제기시
		추가공사 이상징후 발생	-2	건당	시스템에 협력사가 응답
		부당특약 사용	-1	건당	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
	가점 요소	실천리더 주관 본부 자체점검	5	회당	최대 10 점 (결과보고서 등 확인 시)
		현장소장 주관 교육	2	회당	최대 10 점 (출석부, 사진 등 확인 시)
		공정거래 법 위반 자진시정	5	건당	현장 자진시정 限 (입금확인서 등 확인 시)
정성 평가	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, 공사금액, PJT 난이도, 수급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			공정거래그룹이 결정	

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	문서번호	개정번호	페이지
		5GG-0900-010	12	18/18

[공정거래 우수 실천리더 선정 평가표]

구분	평가요소		배점(점)	단위	비고
정량 평가	기본 점수	기본부여	100	-	-
	감점 요소	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(공정위)	-10	건당	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
		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(자체점검)	-5	건당	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
		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발생	-3	건당	포스코(이앤씨), 공정위, 국회, 언론사 등 민원 제기시
	가점 요소	실천리더 주관 본부 자체점검	10	회당	최대 40 점 (결과보고서 확인 시)
		실천리더 주관 교육	5	회당	최대 20 점 (출석부, 사진 등 확인 시)
		공정거래 법 위반 자진시정	5	건당	현장 자진시정 限 (입금확인서 등 확인 시)
		공정거래 관련 현장 코칭	1	회당	이메일 등 확인 시
정성 평가	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, 우수 현장이 선정된 본부의 실천리더가 수상				공정거래그룹이 결정